

조합원 업무 안내

건설공제조합은 그동안 기본운영자금 좌당한도 확대, 조합원당 담보운영자금 500억원 한도 부여, 기본운영자금과 담보운영자금 중복 이용 허용 등을 통해 최고의 용자한도를 부여함과 아울러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역대 최저 수준에서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의 상승, 자금시장의 경색 등으로 조합원의 용자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원의 용자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조합원간 용자이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용자제도를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그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용자제도 변경 주요 내용 1부. 끝.

건 설 공 제 조 합 이 사 장

(붙임)

용자제도 변경 주요 내용

1 기본운영자금 용자

① **좌당 용자한도 축소** : 21년 7월 이전으로 환원

신용등급	좌당 한도		
	현행	변경	비고
AAA · AA · A	1,300,000원	1,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당 200,000원 축소 건설업등록 기준좌수의 좌당한도 835,000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
BBB · BB · B	1,280,000원	1,080,000원	
CCC · CC	1,270,000원	1,070,000원	
C · D	1,250,000원	1,050,000원	

[중요 사항 1 : 한도 초과금액은 상환기한 도래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한 도래 후 1년 이내 분할상환]

- 현재 이용 중인 기본운영자금 중 건설업등록 기준좌수에 해당하는 용자금액을 제외한 기본운영자금이 변경된 좌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초과좌수×200,000원)은 해당 기본운영자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할 경우 일시상환하거나 상환기한 도래 이후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여야 함

[중요 사항 2 : 일시상환 후 재용자 시 변경된 좌당한도 적용하여 용자 실행]

- 분기말, 연말 등 재무지표 관리를 위해 기본운영자금을 일시 상환하고 재용자를 받을 경우 변경(초과좌수당 200,000원 축소)된 좌당한도를 적용하여 용자가 실행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② **이용기간별 한도 감축** : 기본운영자금의 장기 이용에 따른 조합원간 형평성 저해 등 해소를 위해 신설

구분	적용 시점	감축 기준	비고
신규 이용 기본운영자금	신규 용자 실행일로 부터 2년 경과 후	1년마다 5%p씩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된 기본운영자금 용자한도 기준 최대 10%p까지 감축
기존 이용 기본운영자금	기존 용자 실행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③ 기본운영자금의 월간 실행금액 한시적 제한(실행한도제) : 조합원간
형평성 등 고려**

구 분	내 용
월간 실행한도 및 집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의 변경된 기본운영자금 용자한도에 불구하고, 기본운영자금 순용자는 매월 160억원 내외에서 실행 매 영업일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기준에 따라 익일 이후 집행
배분 기준 등 (초과좌수 좌당 20만원 이하 후 한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예치일 후 2년 도래 조합원의 건설업등록 기준좌수에 대한 최초 기본운영자금에 대하여는 좌당한도 50만원 우선 배분 미이용 조합원은 변경된 한도의 20% 인정 20% 이하를 이용 중인 조합원은 변경된 한도의 20%까지만 인정
실행한도제 적용 제외	<p><아래의 경우 월간 실행한도제 미적용 : 좌당한도 20만원 이하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 분기말 등 일시상환 후 재용자를 받는 경우 추가출자한 좌수에 대하여 용자를 받는 경우 등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운용규모는 탄력적 운용하고, 필요시 실행한도 조정 등 조치 예정

2 담보운영자금 용자

① 조합원당 500억원 한도 폐지 : 16년 9월 이전으로 환원

현 행	변 경
Max (500억원, 좌당 3백만원)	좌당 3백만원

[중요 사항 : 한도 초과금액은 상환기한 도래 이후 2년내 상환]

- 현재 이용 중인 담보운영자금 중 좌당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담보운영자금의 상환기한 도래 이후 2년 이내에 상환(분할상환 불가능)하여야 함

② 담보운영자금과 기본운영자금 중복이용 폐지 : 14년 5월 이전으로 환원

현 행	변 경
동일 출자증권을 담보로 기본운영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중복 이용이 가능	동일 출자증권을 담보로 기본운영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중복 이용이 불가능

**[중요 사항 : 중복이용에 따른 한도 초과금액은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1년내 분할상환
또는 2년내 일시상환]**

- 현재 담보운영자금과 기본운영자금을 중복하여 이용하는 조합원이 기본운영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해당 기본운영자금의 상환기한 도래 시 일시상환하거나 상환기한 도래 이후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여야 하고,
- 담보운영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해당 담보운영자금의 상환기한 도래 이후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함

3 변경 제도 시행일

① '22년 12월 1일

② 기본운영자금의 월간 실행금액 한시적 제한(실행한도제) : '22년 11월 22일